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진선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919 발의연월일: 2024. 11. 27.

발 의 자:진선미·임광현·강경숙

이용우 · 김한규 · 김성회

위성락 • 서영교 • 윤종군

한병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"소방간부후보생"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소방위 계급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7년 이래 "소방간부후보생"이라는 명칭을 지속 사용하고 있으나, 간부라는 표현이 조직 내외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대적 흐름에 따른 조직구조 변화에 맞게 소방위 계급에 간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"소방간부후보생"을 "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"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7조 등).

법률 제 호

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단서 중 "소방간부후보생"을 "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소방간부후보생"을 "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"로 한다.

제11조 본문 중 "소방간부후보생"을 "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"로 한다.

제12조 중 "소방간부후보생"을 "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"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"소방간부후보생"을 "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"로 한다.

제31조의 제목 "(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)"을 "(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보수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소방간부후보생"을 "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신규채용) ① 소방공무원	제7조(신규채용) ①
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	
로 한다. 다만, 소방위의 신규	
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	
로 선발된 사람(이하 " <u>소방간</u>	소방위공개경
<u>부후보생</u> "이라 한다)으로서 정	<u> 쟁채용시험합격자</u>
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	
중에서 한다.	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 단서에 따른 <u>소방간</u>	③소방위공개
<u>부후보생</u> 의 교육훈련, 제2항	<u>경쟁채용시험합격자</u>
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	
에 따른 채용시험(이하 "경력	
경쟁채용시험등"이라 한다)을	
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소방공	
무원의 계급, 임용예정직에 관	
련된 자격증의 구분, 근무실적	
또는 연구실적, 의용소방대원	
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	
있는 지역과 그 승진 및 전보	
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	
통령령으로 정한다.	
제11조(시험실시기관) 소방공무	제11조(시험실시기관)

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 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. 다만,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.

제12조(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)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 자격,시험방법,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임용후보자명부) ① (생략)

② 임용권자는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(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을 포함 한다)과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 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성적순으로 각각 신규 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

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
제12조(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
방법)
<u>소방위공개</u>
<u>.</u>
· 제13조(임용후보자명부) ① (현행
과 같음)
②
소방위공개경쟁
채용시험합격자

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 다.

③ • ④ (생 략)

제31조(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) 교육 중인 소방간부후보생 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 비(實費)를 지급한다.

-	
-	.
(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;	31조(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
7	합격자의 보수 등)소방
-	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
-	